

**한양대 ERICA 캠퍼스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부지임대개발
입주기업 모집공고 [산업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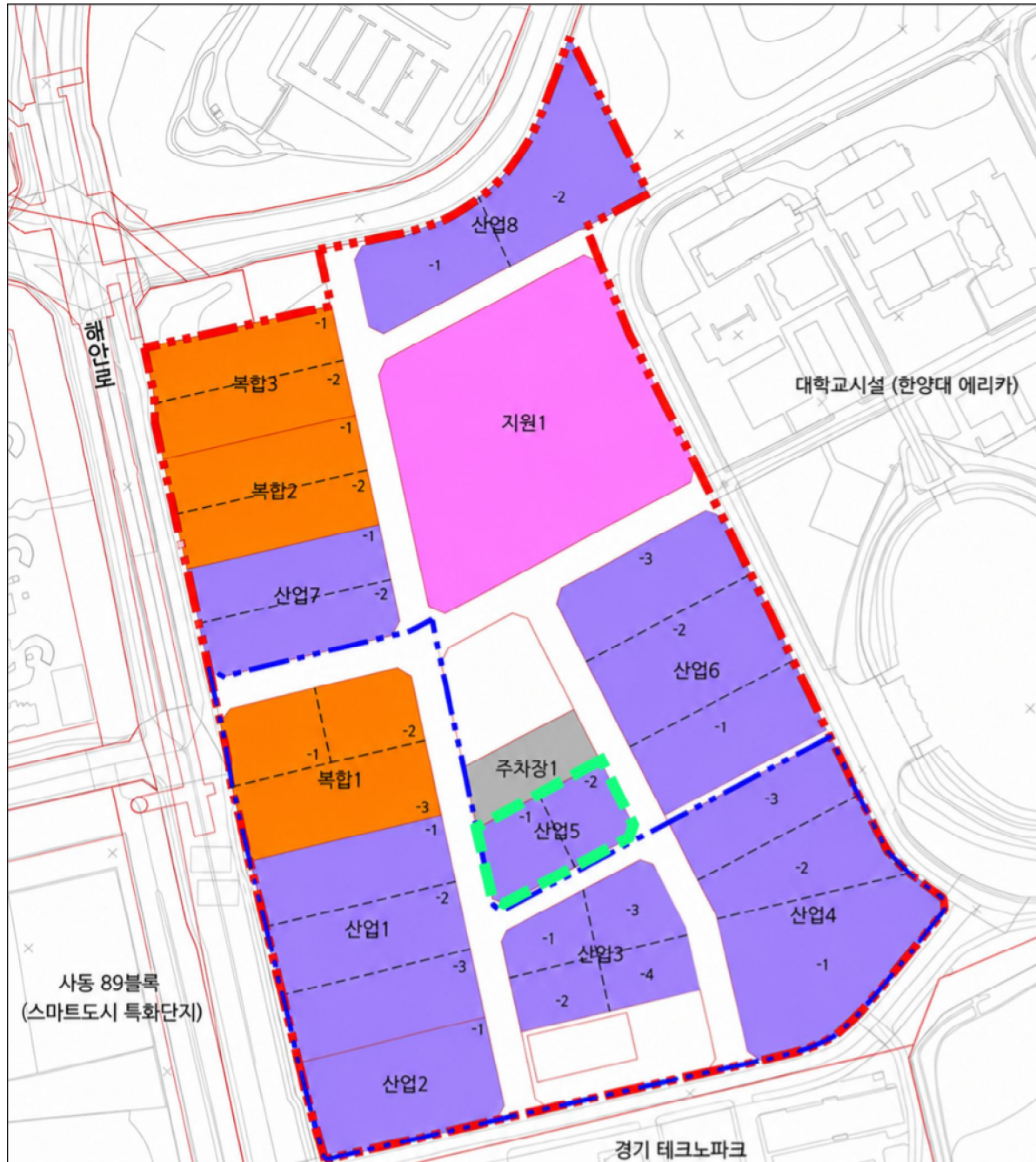
2026. 07. 24.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혁신파크사업단

1. 임대 공급대상 토지

공급용도	가구번호(필지)	면적(m ²)	건축규모	임대료(원/년)
산업용지5 (4,487m ²)	산업5-1	2,400	25층 이하 (건축물 최저 높이 20m이상으로 대학 건축계획 및 캠퍼스혁신파크 조성계획에 부합하여야함)	공시지가 * 3% (VAT별도) (2026년 공시지가 1,590,000원/m ²) 예) 산업5-1 임대료 1,590,000 * 0.03 * 2,400 = 114,480,000원
	산업5-2	2,087		



- * 한양대 ERICA 캠퍼스혁신파크 준공업지역 공시지가를 적용하며, 매년 공시지가 변동에 따라 임대료는 증감될 수 있다.
- * 건축물의 형태나, 규모는 임대사업자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우리 대학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다.

2. 입주대상 업종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비고
첨단 제조 산업 A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7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C28 전기장비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 입주대상업종에 대하여는 관리기관에 미리 적격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입주 후 사업제안서와 상이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일정 및 제출서류

번호	구분	일정	제출서류	비고
1	공고	26.07.24		일간신문, 산업입지정보센터, 캠퍼스혁신파크 홈페이지 (eip.hanyang.ac.kr)
2	질의	26.07.31까지	자유양식	E-Mail 접수 (segaire@hanyang.ac.kr)
3	질의답변	26.08.05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혁신파크 홈페이지 (eip.hanyang.ac.kr)
4	사업제안서 제출	26.08.31까지	7. 제출서류 참조 사업제안서는 기업에서 8번 평가기준을 감안하여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	한양대학교 ERICA내 캠퍼스혁신파크 개발팀<방문제출>
5	사업제안서 평가	26.09.03	사업제안발표(20분) 질의응답(10분)	한양대학교ERICA내 캠퍼스혁신파크사업단
6	부지임대개발입주기업 선정	26.09.10		
7	건설 및 사업협약	26.10	기본계획도면	건축인허가 전 우리대학 건축위원회를 통과하여야한다
8	입주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26.10	추후 통보	입주계약 : 관리기관 임대차계약 : 한양대학교

4. 입주자격 및 선정절차

가. 입주자격

-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추고, 경기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려는 자
- 2) 산업시설용지(산업육성구역)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지원시설 포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공장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유치업종 중 아래와 같은 환경오염시설은 입주를 제한함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의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폐수·폐기물처리 시설 및 보일러·흡수식 냉·온수기시설에 한해 허용)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다만,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의 물질 중,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에서 정하는 물질(BOD, COD, SS, T-N, T-P, 총대장균군수)의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 제1호 다목 규정에 따라 '나'지역 기준으로 그 외 물질은 '가'지역 기준 이내로 1차 처리 후 연계처리하거나 전량 위탁 처리하는 업체에 한해 허용)
- 「악취방지법」 제3조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나. 필지신청 및 선정방법

- 1) 신청자는 필지를 지정하여 1필지 이상 신청하며, 2개 이상 중복 신청 가능하나 필지 분할은 불가능하다.
- 2) 모든 필지는 평가를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며, 평가점수가 800점 미만이거나 적합한 사업대상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입주기업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 3) 신청 접수시 필지신청이 경합될 경우 경합이 없는 토지로 위치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다. 선정절차

- 1)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47조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단의 서류평가 및 대면평가를 거쳐 부지임대개발입주기업을 선정한다.
- 2) 공정한 평가를 위해 심사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별도의 평가표를 기준으로 평가된다. 사업신청자는 사업 제안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사업제안을 20분 이내로 발표한다. (일정 및 장소는 추후 공지)**

5. 부지임대조건

가. 임대기간 : 30년

계약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재계약을 하고자 할 때, 10년 단위로 2회 연장가능, 최장 임대기간은 50년(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46조)으로 한다.

나. 입주기업은 임대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되는 경우 해당 토지에 축조된 시설물을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 임대료

1) 임대보증금 : 1년분 임대료

2) 임대료 : 개별공시지가의 3%(부가가치세 별도), 초년도 이후의 임대료는 매년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에 연동하여 조정한다.

3) 납부시기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1개월이내 임대보증금 및 초년도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라. 부담금

1) 부지조성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부담금은 각 필지별 임대사업자가 부담한다. 부담금의 산정은 개발과정에서 각 필지별 부과된 실투입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각 필지별 부담금 배분이 어려울 경우 공공용지(도로,공원등)를 제외한 전체 면적대비 임대부지의 면적비율로 분할하여 각 임대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2) 부담금의 납부시기는 임대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마. 철거이행보증금(총공사비의 3%내외)

1) 한양대학교가 산출한 철거공사비 철거단가에 따른 금액을 해당 필지의 사용승낙일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등 담보물을 제공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은 토지사용승낙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 후 3개월까지이다.

2) 당초 철거이행보증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예정면적에 비해 추후 실제 건축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철거이행보증금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종료 후 갱신하는 경우 철거이행보증금은 소비자 물가지수변동률 등을 적용하여 재산정한다.

6. 토지사용가능시기

가. 토지사용가능시기 : 임대차계약 이후

나. 공급면적은 조성사업 준공 전 가분할 면적이므로 준공 후 확정측량 결과 필지 선형 변경 및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면적 증감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정산함. 이 경우, 기 수납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와 재산정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차액을 다음 회차 임대료에서 가감하여 수납한다. 정산금에 대한 이자는 상호 부리하지 않는다.

다. 공급된 토지는 2개 이상의 필지를 1개로 통합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1개의 필지를 2개 이상으로 분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7. 사업제안서 작성 및 제출

가. 제출서류

1) 사업참가신청서(서식1)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5) 최근 2개년 재무제표(세무사 확인원 포함)
-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2)
- 7) 사업제안서

사업제안서는 형식 제한이 없으나 다음 항목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 ① 기업소개(회사 비전 및 사업현황, 실적)
- ② 재무현황
- ③ 건축규모 및 건설시기(층수, 연면적)
- ④ 총 사업비 및 건축재원조달계획
- ⑤ 종사자수 및 고용계획
- ⑥ 산학협력계획(연구 협업 방안, 대학 공간 제공 등)

나. 사업제안서 이외에 사업신청자가 사업제안서 평가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또한, 학교가 사업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경우 제출해야 한다.

다. 사업제안서 제출시 원본 2부와 사본 20부(합계 22부) 및 원본 수록 USB를 제출하여야 한다.

(※ 회사명은 2부(원본)에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기재하지 않음)

8. 평가기준

① 평가배점 기준

평가대상	평가요소	평가항목	배점	비고
부지임대개발 입주기업 평가 (정량 평가)	기업현황	- 매출액 - 매출액 증가율 - 영업이익률 - 기업상장여부	100	계량
	재무능력	- 신용평가등급 - 부채비율 - 유동비율	100	계량
	건물규모	건물의 규모 및 활용방안	100	계량
소계			300	
부지임대개발 입주기업 평가 (정성 평가)	사업제안 내용	- 사업의 목표 및 내용 - 사업제안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및 적절성	300	비계량
	재원조달계획	- 사업비 산정 및 연차별 투입계획 - 재원 확보 계획	100	비계량
	산학협력방안	산학협력을 위한 계획	200	비계량
	고용계획	유치가능한 예상 고용 직종 및 인원수	100	비계량
소계			700	
총계			1,000	

② 부지임대개발 입주기업 평가 세부기준(정량 평가)

평가요소	평가항목	평가방법	배점	평가척도						
기업현황 (종합적 역량) (100점)	매출액	• 직전 회계연도의 매출액	20	4,000억원 미만		4,000억원 이상~7,000억원 미만		7,000억원 이상		
				10		15		20		
	매출액 증가율	• 직전 회계연도의 매출액증가율	20	2.5%미만	2.5%이상~5%미만	5%이상~7.5%미만	7.5%이상~10%미만	10%이상		
				12	14	16	18	20		
	영업 이익률	• 직전 회계연도의 영업이익률	30	3.4%미만	3.4%이상~6.8%미만	6.8%이상~10.2%미만	10.2%이상~13.6%미만	13.6%이상		
				18	21	24	27	30		
	기업상장 여부	• 한국거래소 기준	30	비상장		코스닥상장		코스피상장		
				20		25		30		
재무역량 (100점)	신용평가 등급	• 국내 신용평가사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등급	40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점 수
				A-이상		A2-이상		A-이상		40
				BBB+		A3+		BBB+		36
				BBB0		A30		BBB0		32
				BBB-		A3-		BBB-		28
				BBB-미만		A3- 미만		BBB-미만		24
	부채비율	• 직전 회계연도의 부채비율	30	175%이상	175%미만~150%이상	150%미만~125%이상	125%미만~100%이상	100%미만		
				18	21	24	27	30		
	유동비율	• 직전 회계연도의 유동비율	30	37.5%미만	37.5%이상~75.0%미만	75.0%이상~112.5%미만	112.5%이상~150%미만	150%이상		
				18	21	24	27	30		
건축규모 (100점)	건축규모 (용적률)	• 캠퍼스혁신파크 마스터플랜에 부합하는 건축규모	100	용적률 200%미만		용적률 200%이상~250%미만		용적률 250%이상~300%미만		용적률 300%이상
				40		60		80		100
합계			300							

③ 부지임대개발 입주기업 평가 세부기준(정성 평가)

평가 요소	평가항목	평가방법	배 점	평가척도				
				매우 미흡 (E)	미흡 (D)	보통 (C)	우수 (B)	매우 우수 (A)
사업 제안 내용 (300점)	사업의 목표 및 내용 (사업방향의 적절성)	• 사업 목표 및 내용의 합리성 • 추진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및 적절성 • 시장분석 등 수요분석 • 기업 발전계획 • 사업리스크 분석 및 리스크관리 계획의 적정성 • 확장 및 성장가능성	300	180	210	240	270	300
재원 조달 계획 (100점)	사업비 산정 및 연차별 투입계획 및 재원 확보 계획	• 사업비 세부내역 및 적정성 • 세부사업추진 일정 적정성 • 연차별 사업비 투입비율 등 • 자금조달계획의 실현가능성 • 자기자본 투입 여부	100	60	70	80	90	100
산학 협력 계획 (200점)	산학협력을 통한 공공성 확보 계획	• 산학협력 기여방안 • 지원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 대학 산학협력 공간 제시	200	120	140	160	180	200
고용 계획 (100점)	인력운영 계획	• R&D 인력 운영계획 • 신규 고용 창출 계획 • 입주 종사자 규모	100	60	70	80	90	100
합계			700					

9. 건축제한사항 및 토지사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 가. 신청자는 본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을 위한 산업단지계획 승인내용(변경 승인내용 포함), 환경·교통·재해 등 각종 영향 평가의 협의내용(변경 및 재협의내용 포함), 에너지 사용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와 건축 관련법규(건축법, 주차장법, 학교보건법, 관련조례 등) 등을 임대(입주) 신청 이전에 반드시 열람·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률 내용에 따라야 한다.(※ 건축제한사항은 공고일 이후에 법령 또는 시조례 등의 제정·개정으로 강화될 경우에는 공고일 이후 강화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야 한다.)
- 나. 사업진행 중 계획선 조정, 문화재발굴조사 및 보존, 제영향평가(환경·교통·재해 등), 광역교통개선대책 등의 재협의 및 협의내용 이행 등으로 인한 인·허가 변경 및 그로 인한 목적용지(주변토지 포함)의 토지이용계획(면적, 획지계획선, 용적률, 건폐율 등)과 토지사용가능 시기가 변경 될 수 있음을 수인하여야 한다. 또한, 건축공사 등을 위한 진·출입용 임시 가설도로(미포장)를 개설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대학 및 지자체와 협의 및 승낙을 득한 후 비산먼지 등 환경피해 감소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다. 경계확인 및 건축착공 등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본교가 시행하는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본교와 협의 및 승낙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라. 단지조성 시 우수처리 및 계획고 확보를 위한 일부 법면(배할선)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성공사 현황을 감안하여 건축하여야 하며, 토지사용 중 도로, 전기, 통신, 도시가스, 상하수도, 경계석, 가로수 등의 공공시설물을 파손·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 마. 건축과정에서 발생한 사토, 건축폐기물 등은 신청자가 처리하여야 하며, 건축공사 시행으로 인한 각종 환경문제, 민원처리는 신청자에게 책임이 있다.
- 바. 가로수, 가로등, 전기공급시설, 오수중계펌프장, 정압기 등 공공시설물은 공익시설로서, 건축 설계 시 이를 확인 후 설계하여야 하며 추후 공공시설물의 이전을 요구할 수 없다.
- 사. 조성공사 및 확정측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추후 확정측량 결과 반영 등 산업단지계획 변경에 따라 필지 면적증감 및 획지 선형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다.
- 아.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신청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한 후 건축설계를 하여야 함. 전력·통신·가스·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에 대하여는 추후 신청자가 각 시설설치 기관 및 지자체에 인입 방법 등을 별도로 협의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특히 전력인입은 한국전력과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우리학교는 책임지지 않는다.
- 자. 차량 진출입구는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의거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음에 따라 도로계획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상위계획(토지이용 계획 등)에 의해 변경 될 수 있다.
- 차. 금번 공고하는 캠퍼스혁신파크는 토지의 소유권이 한양대학교ERICA에 있으므로,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건물 설립에 의한 건물담보 대출시 우리대학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입주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금리 적용 등 제약이 있을 수 있다.

- 카. 신청자는 계약 토지 외로 유출되는 우수로 인한 주변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수처리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 타. 신청자는 해당 토지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담금에 대한 사항을 사전확인·준수하여야 하며, 본교에서 부과하는 부담금 이외에 관계법령 및 해당 지자체 조례에 의거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각종 부담금은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파.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른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담당부서에 설치신고를 득하여야 한다.

10. 기타 유의사항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에 의한 개발계획·실시계획 승인사항,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건축법 등 관계 법령상 건축허가 제한 또는 규제, 인허가 승인 및 도시계획결정, 해당 시·군·구 조례 등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공고 후 개정되어 강화된 경우 포함), 사전에 관계기관에 열람 및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다.
- 나. 신청자는 공급공고문, 입주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임대신청유의사항 등을 입주 및 임대신청 전에 반드시 열람·확인하여야 하며,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토지의 조성상태 및 계획, 현황(형상·고저·암반·법면상태·연약지반 등), 사업지구 내·외의 입지여건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다.
- 다. 신청자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의거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정하여진 기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라. 조성사업 과정에 문화재시굴·발굴조사, 제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등으로 개발계획·실시계획 등 인·허가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주변토지의 용도·업종별 배치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고, 토지사용 가능시기 등이 연기될 수 있다. 신청자는 이로 인한 변경사항을 수인하여야 한다.
- 마. 신청서에 신청자격, 입주업종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 신청내용과 다르게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계약은 해지될 수 있다.
- 바.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 또는 종료 시 임차인이 임대토지 내의 건축물 등을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임대보증금은 철거완료시까지 반환되지 않는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은 철거비용이 철거이행보증금을 초과할 경우 철거비용으로 우선 충당하고, 연체한 임대료와 지연손해금, 입주(대상)기업의 계약불이행·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액 납부에도 충당될 수 있다.
- 사. 우수·오수·상수 분기시설은 건축공사 착공 전 조성공사 계획에 따라 설치 연결하여야 하고, 단지조성시 우수처리 및 계획고 확보를 위한 일부 법면(배할선)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성공사 현황을 감안하여 건축하여야 하며, 토지사용 중 전기, 통신, 도시가스, 도로·상하수도·경계석·가로수 등의 공공시설물을 파손·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아. 현황 또는 당초 조성계획 이외에 추가로 대상토지에 대한 옹벽 설치, 평탄화 작업 등을 본교에 요구할 수 없다.

자. 기타 상세한 계약조건은 게시공고문, 임대차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다.

차. 산업시설용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다.

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 ① 임대차계약 체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45조제2항제1호의 경우 18개월) 이내에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② 건축물의 준공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45조제2항제1호의 경우 18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③ 대상토지를 임대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한 경우
- ④ 사업시행자의 동의 없이 대상토지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대상토지를 전대한 경우
- ⑤ 산업단지 관리기관과의 산업단지 입주계약이 취소,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 ⑥ 산업단지 관리기관의 관리기본계획상 입주 업종에 적합하지 않고, 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입주업종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 ⑦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6개월 이상 공사를 중단하거나 지연한 경우
- ⑧ 그 밖에 임차기업의 중대한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문의처 :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혁신파크 사업단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로55 라이언스홀 2층)
Tel. 031-400-4467,4440 E-mail. segaire@hanyang.ac.kr

끝.

한양대학교 캠퍼스혁신파크사업단 혁신파크부지 부지임대개발입주기업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17조 제2항, 제22조 및 제24조에 의거,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입주신청 및 안내 등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동의여부를 본인이 직접 해당란에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안내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필수) 성명, 소속기관명, 거주지역, 주소지, 연락처(휴대전화번호등), 이메일 주소	■ 캠퍼스혁신파크 입주신청 및 안내	수집된 개인정보는 입주 관리를 위하여 준영구 보관 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필수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	---------	--------------------------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필수항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해당 사업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유식별정보(외국인등록번호) 수집 · 이용 안내 (외국인만 해당)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외국인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에 한함)	■ 캠퍼스혁신파크 입주신청 및 안내	수집된 개인정보는 입주 관리를 위하여 준영구 보관 합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고유식별정보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	---------	--------------------------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수집 · 이용 안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 납세 신고	대표자(주민등록번호)	■ 소득세법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한양대학교 캠퍼스혁신파크사업단장 귀하